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64 발의연월일: 2021. 5. 25.

발 의 자: 오영훈・이상헌・도종환

양정숙 · 이용선 · 김승수

신정훈 • 이병훈 • 송기헌

이달곤 • 윤상현 • 김한정

이낙연 • 어기구 • 김형동

김석기 · 홍문표 · 박성중

이명수 · 최인호 · 성일종

김정재 의원(22인)

제안이유

성균관과 향교,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 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 가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 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종합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 마.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점검,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성균관·향 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균관"이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유교이념을 보급하며,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으로 서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를 말한다.
-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 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의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성균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 9조에 따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제1항 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성균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성균관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 관리·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①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한 중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

화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균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협의체"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성균관을 연구기관으 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연구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 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 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하거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체 험하고 교육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험관을 국민전통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